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도

2019. 10. 17







국제거래 정보

통합보고서

제도





CONTENTS



BEPS 프로젝트 추진현황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도 개요



통합보고서 FA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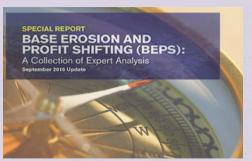


I. BEPS 프로젝트 추진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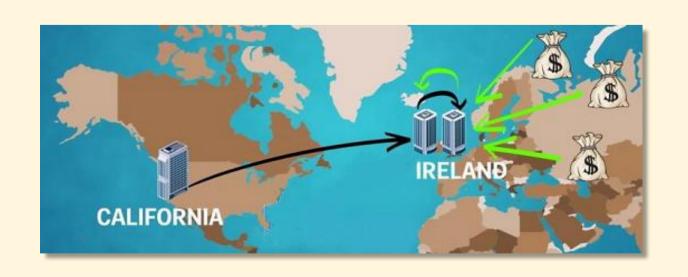
BEPS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ase Erosion & Profit Shifting)



각국의 **조세제도 차이나 허점**을 악용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행위**





I. BEPS 프로젝트 추진현황

◎ キルコをひと

G20 정상회의 BEPS Action Plan 승인(15개 과제) G20 정상회의 BEPS 프로젝트 최종보고서 승인

OECD

⊗
»
OECD

'12.6월

'13.9월

'14.7월

'15.11월

'16.6월

OECD

OECD

(B))OECD

OECD 재정위원회 회원국간 BEPS 프로젝트 추진 결정

OECD 이사회 BEPS 프로젝트 1차 추진결과물 승인 BEPS 프로젝트 포괄적 이행 체제(Inclusive Framework) 구축 및 후속조치 진행중



BEPS Action Plan

15

Action 1

디지털 경제

Action 2

혼성불일치 대응방안 Action 3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과세강화 Action 4

금융비용 공제제한 Action 5 유해조세제도 대응

Action 6

조세조약 남용방지 Action 7

고정사업장 인위적 회피방지 Action 8

무형자산 이전 Action 9

위험·자본의 이전 Action 10

기타 고위험 거래 관련

Action 11

통계분석

Action 12

강제적 보고제도 Action 13

이전가격 문서화 Action 14

조세조약 분쟁해결 Action 15

다자간 협약 개발

I. BEPS 프로젝트 추진현황

우리나라의 BEPS 프로젝트 제도도입 현황

구 분	OECD 논의내용 및 권고안	제도도입 및 운용
1. 디지털경제	디지털경제 과세 문제에 간접세 중심 대응	국외제공 전자적용역 VAT 과세 (게임, 음성, 동영상파일, SW('15.7월부터) /광고게재, 클라우드서비스, 중개용역 등('19.7월부터))
2. 혼성불일치	국가간 세법차이를 이용한 이중비과세의 혼성불일치 효과 제거	상대국에서 익금으로 보지 않는 지급비용의 손금부인 규정 신설(′18.1월 시행)
3. CFC	조세피난처 대책세제(CFC) 강화	CFC 지속 세법개정
4. 이자비용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소득의 30%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비용의 손금 불인정 ('19.1월 시행)
5.유해조세제도	유해조세제도 폐지 권고 및 관련 APA · 조세예규 정보 교환 의무화	OECD 유해조세경쟁포럼의 제안에 따라 조특법 §12개정하여 유해성 제거 * 특허권 등 기술이전 소득 전체에 대해 세액감면 →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액감면 일방 APA 정보교환('16.6월부터)
6.조약남 용	조약에 조약남용방지규정 의무화 국외전출세(비거주자 전환 시 양도소득 과세)	기재부에서 향후 조약 제,개정 시 명시 예정 국외전출세 시행('18.1월부터)
7.고정사업장	고정사업장 범위 확대로 원천지국 과세권 강화	′18.12월 고정사업장 범위 확대 개정(′19.1월 시행)

I. BEPS 프로젝트 추진현황

우리나라의 BEPS 프로젝트 제도도입 현황

구 분	OECD 논의내용 및 권고안	제도도입 및 운용
8-10 이전가격	무형자산, 위험 등의 이전을 통한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실제 가치창출 기여도에 따라 소득배분하도록 이전가격지침 개정	′18.12월 이전가격 과세 시 실질에 따른 거래구조 재구성 신설(′19.1월 시행)
11. 통계분석	BEPS 규모 및 대응조치의 경제적 효과 수집·분석	'18.11월 OECD 1차 법인세 통계 발간을 위한 법인세 실효세율 설문에 응답
12. 강제적보고	정보 비대칭문제 해결 위해 기업의 조세회피 전략에 대한 과세당국의 정보 수집능력 강화	미국, 영국, 아일랜드, 캐나다, 포르투갈, 남아공 등 도입
13. TP문서화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상세정보를 과세관청이 확보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 강화 및 국가별보고서 정보교환 실시	'15.12월 통합보고서 제출제도 도입 ('17.12월 첫 시행) '18.6월부터 국가별보고서 정보교환
14 부생해겈		'17.1월부터 고정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도 상호합의 신청권 부여
15 나사/1연안	조약 관련 BEPS 대응조치의 신속한 반영 위해 양자조약 개정 대신 다자간 협정에 가입토록 함	′17.6월 BEPS 방지 다자간협약에 서명(′19.6월 현재 총 88개국 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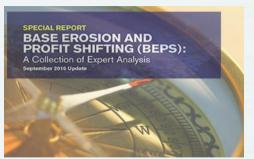


Ⅱ.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도 개요











도입 배경 및 경과

- OECD는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조작 등을 통한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 제도 도입을 권고 (BEPS 프로젝트 Action 13 이전가격문서화)
- '15년 개별기업보고서·통합기업보고서, '16년 국가별보고서 제출제도 도입

 ▷ '16년 귀속분에 대해 '17.12월 최초 제출

이전가격문서화의 목적



이전가격 관련 고려사항을 적절히 판단하여 일관된 이전가격 정책을 유지

이전가격 위험평가 및 세무조사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음



보고서의 종류 및 내용

개별기업보고서 (Local File)

- ▶개별법인에 대한 설명
- ▶개별법인의 재무현황
- ▶ 현지 법인의 특수관계자간거래 관련 정상가격 산출내역

통합기업보고서

(Master File)

다국적기업 그룹의 사업 전반에 대한 내용

그룹전체 조직구조, 사업내용, 무형자산 보유 및 거래현황, 관계사별 재무·세무현황 등

국가별 보고서

(Country-by-Country Report)

▶ 다국적기업의 국가별 소득· 세금 및 사업활동 배분 정보

국가별 매출액, 세전이익 납부세액, 종업원수, 유형자산, 현지법인 목록, 사업활동

개별기업보고서 · 통합기업보고서

제출의무자

-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 ① 국외특수관계인과의 해당 과세연도 재화거래, 용역거래, 대여 및 차입거래의 합계액이 500억원을 초과하고,
 - (2) 해당 과세연도 매출액이 1천억원을 초과할 것

제출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둘 이상의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통합기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아래의 납세의무자가 **대표로 제출** 가능

납세의무자간 지배·종속관계	보고서 제출자
(사례1) 납세의무자간 지배·종속관계인 경우	지배법인
(사례2) 납세의무자가 모두 최상위 지배법인의 종속법인이며, 그 납세의무자간 상하관계가 있는 경우	상위법인
(사례3) 납세의무자가 모두 최상위 지배법인의 종속법인이며 동일한 위치에 있는 경우	그 중 하나의 법인



제출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 역외교환정보시스템(AXIS 포털)을 통해 전자신고 (국가별보고서는 전자신고만 가능)

미제출시 제재

• 각 보고서별로 3천만원 의 과태료 부과 ('18.1월 이전 제출기한 분은 보고서별 1천만원)

국가별 보고서

제출의무자

-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 1) (내국기반) 직전년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 1조원 초과 내국법인(최종 모회사)
 - 2 (외국기반) 그룹전체 직전연도 연결기준 매출액이 7억 5천만 유로를 초과하는 외국계법인의 국내 자회사로서
 - 최종 모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없거나,
 - 최종 모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사유 등으로 국가별보고서의 교환이 되지 않는 경우
 -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가별 보고서

제출 내용

- 기업 그룹의 국가별 소득·세금 및 사업활동 정보
 - * 국가별 매출액, 세전이익, 납부세액, 종업원 수, 유형자산, 현지법인 목록, 사업활동

정보 교환

- '18.6월부터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다자간 협정('16.6월)」에 따라 체약 상대국과 국가별 보고서 교환
 - * '18.12월말 기준 미국, 중국, 일본, 인도 등 82개국과 교환협정 체결(68개국 발효)

▶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사전신고

제출의무자

최	최종 모회사가 내국법인인 경우	직전년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원 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최상위 연결재무제표 를 작성하는 국내지배기업
최종		직전년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억5천만 유로 (상당액)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최종 모회사가 외국법인인 경우	국내 관계회사
		* 최종모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에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인 경우에도 사전신고는 하여야 함

제출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 국내 관계회사가「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 자료」를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국가별보고서를 직접 제출해야 함

미제출시 제재

○ 각 보고서별로 **3**천만원 의 과태료 부과 (18.1월 이전 제출기한 분은 보고서별 1천만원)

과태료 부과 사례

- 통합보고서 제출제도 자체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으로 미신고
- ○국가별보고서는 최종모회사의 연결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나,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가 없거나 적어 대상이 아니라고 오해하여 미신고
- 최초로 연결매출액 1조원이 초과하거나 최초로 매출액 및 국제거래 규모가 통합보고서 제출대상기준을 초과한 첫해에 미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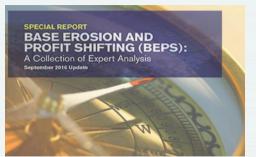


III. 통합보고서 FAQ











국조법 시행규칙의 통합기업보고서 작성방법을 보면, 통합기업보고서는 서식을 그대로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서식에서 정한 내용을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개별기업보고서에도 이 방법이 적용되는지

→ 개별기업보고서는 시행규칙 서식대로 작성해야 함

○ 통합기업보고서 작성시에는 시행규칙 서식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서식에서 정한 내용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행규칙 서식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합니다.

직전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최종모회사인 내국법인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규모와 관계없이 국가별보고서의 제출의무가 있는지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규모와 관계없이 제출의무 있음

- ○국조법 제11조에 따르면,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가 있음
-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나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 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출(차용), 그 밖의 거래자의 손익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임 (국조법 제2조 제1항)

국조법 제6조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과의 모든 거래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 사전승인 기간 동안 개별기업보고서의 작성의무가 면제되는가?



면제되지 않음

○ 다만, 사전승인이 적용되는 대상기간 동안의 해당 국제거래에 대한 내용을 개별기업보고서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기타 정보는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별기업보고서를 기한내 제출하였을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 면제받을 수 없음

- ○국조법 제13조 【가산세 적용의 특례】는 **법인세 신고시** 정상가격산출방법에 관한 증명자료를 보관. 비치하고, 합리적 판단에 따라 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서,
- ○개별기업보고서를 기한내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의무를 불이행했을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모법인 소재 국가에서는 통합기업보고서 작성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국내 자회사는 통합기업보고서를 작성, 제출해야 하는지



➡ 제출 해야함

○ 통합, 개별기업보고서 작성의무는 각 국가별로 입법화되어 있으며, 국내법상 통합기업보고서 제출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의무자는 모법인 소재 국가에서의 제출의무와는 관계없이 국내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내국법인이 해외 지점과의 거래만 있는 경우 통합, 개별기업 보고서 제출의무자인지



➡ 제출의무자가 아님

○ 현재 국조법상 내국법인의 해외 지점은 "국외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다른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없는 경우 통합, 개별기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국외에 최종 모회사인 국외지배주주가 있는 외투기업으로서 국외지배주주의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억 5천만 유로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외투기업은 매출액 및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규모에 상관없이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

🧼 제출의무가 있음

○최종 모회사인 국외지배주주의 직전 과세연도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외투기업의 국내관계회사는 **매출액 및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규모에 상관없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감사합니다



